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908
----------	------

제출일자 : 2020. 12. 4

제출자 : 달성군



1. 동의사항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한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4. 주요내용

가. 규약의 명칭, 목적, 협의회 자격(제1조 ~ 3조)

나. 임원의 구성, 임기, 임무(제5조 ~ 7조)

다. 협의회 사무(제10조)

라. 수입 및 지출(제13조 ~ 14조)

5. 향후계획 :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 후 고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①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한다.
- ②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한다.
- ③ 회원도시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자격) 협의회의 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원도시는 상호간에 신의를 지키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의는 도시별 윤번제로 실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의 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결정·건의 또는 제시한다.

1.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2. 회원도시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 제시
4. 회원도시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5. 기타 본회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 도시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검토 요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회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회비는 년 2,400,000원으로 한다.

②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하며, 회장도시에서는 당해 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직전 회장도시에서 집행한 잔액도 이 조항에 따른다.

③ 세계유산 관련 연구용역 등 공동경비 발생 시에는 이를 회원도시별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4조(지출) ① 협의회회 회비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② 회장도시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 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협의회회 회비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보고 하며, 회계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경주시, 합천군, 종로구, 수원시,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안동시, 경기도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양산시, 영주시, 보은군, 순천시, 해남군, 함양군, 장성군, 달성군, 정읍시, 논산시 22개 도시로 한다.

□ 지방자치법

- 제152조(행정협의회의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95조(행정협의회의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